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1243 |
|----------|------|

2020년 3월 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1. 17. 김희걸 의원(대표발의 외 17명)

나. 회부일자 : 2020. 1. 30.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0. 3. 5. 상정·의결(수정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정책위원회의 사문화된 기능을 현행화하여 심도있는 정책연구 활동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으로의 연계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책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함 (안 제4조, 부칙)
- 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입법안의 검토·심의, 입법청구, 시책 사업의 분석·평가 등의 심의 등 사문화된 심의기능을 삭

제하여 현행화하고, 정책위원회의 정책연구활동을 집중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안 제1,2,7~10조)

○ 개정 조례명 반영, 띄어쓰기 및 용어정리 (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정책위원회의 사무화된 기능을 현행화해 심도 있는 정책연구 활동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자 제안됨.

2 정책위원회 기능(안 제1조, 제2조, 제7조~제10조)

-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에 따르면 정책위원회는 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표-1〉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기능(조례 제2조)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 · 심의
3. 시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주요시책사업의 분석 ·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5.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대안제시 등 정책의 연구
6.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요청하는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학술용역과제의 검토 및 시행중인 사업의 분석 · 평가

- 개정안은 입법안의 검토 심의, 입법청구, 시책사업의 분석·평가 심의 등 정책위원회에서 현재 수행하지 않는 기능을 삭제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 ‘정책위원회’는 2004년 의정활동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책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의 정책자문기구인 ‘정책연구위원회’로 출범(붙임. 1)했으며, 시정 주요사업 정책에 대한 발표회 개최, 워크숍, 분과별 소위원회 회의, 자료집 등을 발간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음.
- 현재 제 16기 정책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으며, 제10대 의회 정책위원회(제 15기~ 제 16기)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2〉 제10대 의회 정책위원회 운영 현황('19. 2월 기준)

| 구분 | 정책연구 발표회 | 소위원회 (4개) | 입법 실적 | 자료집 발간 | 입법안 검토 · 심의 (제2조 제2호) | 시민 입법 청구 관한 심의 (제2조 제3호) | 주요 시책 사업 분석 · 평가 심의 (제2조 제4호) | 정책 대안 제시 (제2조 제5호) | 연구 영역 평가 (제2조 제6호) | 위원회 채택 의안 제출 (제8조) |
|-----|----------|-----------|------------------|--------|-----------------------|--------------------------|-------------------------------|--------------------|--------------------|--------------------|
| 15기 | 4회 | 6회 | 1건 ¹⁾ | 1회 | - | - | - | 16건 | 1회 (총 3건) | - |
| 16기 | 2회 | 2회 | - | 시기 미도래 | - | - | - | 7건 | 1회 (총 3건) | - |

1) '19.2.2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정책위원 공동발의.

- 정책위원회는 오랜 운영기간동안 정책자문기구로서의 기능에 머물러 있으며, 제10대 의회에 들어서도 정책연구발표회, 분과별 소위원회를 통한 정책 제안, 자료집 발간, 연구용역 평가 등을 하고 있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안의 검토·심의, 시민의 입법청구에 대한 사항의 심의, 주요시책사업의 분석·평가 사항의 심의 등은 실제 수행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심의 기능 등을 삭제하여, 의회 내 정책결정 내지 집행기구가 아닌 자문기구 성격의 정책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정책위원회 위원 임기(안 제4조)

-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 제4조는 정책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위원회는 조례 제정 이후(2004년)부터 현재까지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운영되고 있음.
- 안 제4조는 정책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및 정책연구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이와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할 경우, 시민들에게 상임위원회와의 혼란을 줄 수 있고, 정책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연구 및 자문기능)을 하는 타 시·도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임기 현황(붙임. 2)을 살펴보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으며, 16개 의회(서울 포함) 중 10개 의회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5개 의회(대전, 경기도, 충남, 경남, 제주)

는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고 있음.

- 한편 2019년부터 서울시의회는 의원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종합의견

- 개정안은 정책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사문화된 일부 기능을 재조정해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연구 조직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정책위원회 위원 임기의 변경은 위원회 운영 효율성, 다양한 전문가 참여 보장 가능성, 유사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가. 수정이유

- 정책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현행대로 1년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수정의 주요내용

-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변경하고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함(안 제4조, 안 부칙 제2조).

7.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1243 관련 |
|----------|------------|

제안년월일 : 2020년 3월 5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정책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현행대로 1년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변경하고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함(안 제4조,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 타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4조(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 ----- ----- ----- -----.</p> |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 ----- -----.</p> |
| 부 칙 | 부 칙 | 부 칙 |
| |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u></p> |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삭 제></p>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심사·수행하기”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항의 심의”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연구”를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각1명”을 “각 1명”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심의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심의를”을 “운영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안건”을 각각 “정책연구과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을 “입법 및 정책에 관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발굴 및 심사를”을 “발굴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위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u>심사·수행하기</u>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 ----- --- <u>수행하기</u> ----- ----- ----- -----.</p> |
| <p>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서울특별시의회위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u>사항의 심의</u></p> <p>2. <u>서울특별시의회위원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심의</u></p> <p>3. <u>시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u></p> <p>4. <u>주요시책사업의 분석·평가</u></p> | <p>제2조(기능) ----- ----- -----.</p> <p>1. ----- ----- ----- --- <u>사항</u> <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

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5.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
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
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
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
역 결과물의 평가 등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1명

3. 4. (생략)

③ (생략)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신설>

5. -----

----- 연구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울특별시회회의장(이
하 “의장”이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각 1명

3.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
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
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제7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제8조(채택된 의안의 제출) ① 위

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의안 중 의원이 요청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고 그 외의 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입법권고 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

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안건-----
-----.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소위원회) ① -----

----- 운영을 -----

②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
3.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

③·④ (생략)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생략)

② -----
-----.

1. 정책연구과제-----

2. 정책연구과제-----

<삭 제>

4. ----- 입법 및 정책에 관한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
----- 발굴을 -----

-----.

② (현행과 같음)